

지방소비세 도입에 관한 연구

김 대 영*

< 목 차 >

- I. 서론
- II. 세원의 선택
- III. 지방소비세수의 귀속
- IV. 과세권의 결정
- V. 지방재정 과급효과 분석
- VI.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비세 도입을 둘러싼 주요한 쟁점들을 세원의 선택, 세수의 귀속, 과세권의 결정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중앙기능의 지방이양을 통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일정한 가정 하에서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지방재정과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 지방소비세 도입은 우려할 만큼 지방세수 불균형을 야기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지방세수 불균형이 현행보다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소비세 도입은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수 구조를 개선하여 세수 안정성과 신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하에서 지방소비세 도입은 다소나마 지방세입불균형을 조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소비세 도입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려면, 합리적 지방소비세제 도입방안의 검토와 동시에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주제어 : 지방소비세, 소비지표, 지방세수 확충효과, 지방세수 형평화효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I. 서론

참여정부는 출범이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분권의 추진으로 지방복지사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영역이 확대될 뿐만아니라, 자치경찰, 교육자치의 실시등으로 새로운 지방업무영역도 창출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재방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재방재정의 확충이 필요하다. 고유 업무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소요될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세노력 등 자구노력을 통해 마련해야겠지만,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라 새롭게 창출되는 지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재원이양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국가로부터 지방으로의 재원이양은 크게 나누어 국세의 지방세 이양등을 통해 자주재원인 지방세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 확충은 국가재정과의 관계에서 살펴볼 때 지방재정수요 증대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과거의 지방교부세 법정율 변경과정과 연혁을 볼 때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지방세에 비해 세입 자율성이 떨어진다. 이에 비해 자주재원인 지방세수 기반확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과 책임성 면에서 우월하지만, 현재와 같은 지방세수 불균형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지방세수 불균형 나아가 지방재정불균형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즉,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지방세수 불균형 나아가 지방세입불균형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금까지 지방소비세 도입이 논의만 무성하고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상대적으로 재원이 풍부한 서울 등에도 세수가 배분될 것이라는 우려도 지방소비세 도입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이나 교육자치의 도입을 통한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은 서울 등 불교부단체에게도 새로운 행정수요를 발생시키므로 이러한 자치단체에도 재원이양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행 지방교부세제도 하에서는 자치경찰이나 교육자치가 도입되어도 지방에 이양되는 국가기능을 수행할 재원을 서울 등 불교부단체에는 교부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이양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서 지방소비세 도입이 검토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지방세수 기반확충방안 중 하나로 많이 논의되고 있는 지방소비세 도입을 둘러싼 주요한 쟁점들을 세원의 선택, 세수의 귀속, 과세권의 결정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지방소비세 도입의 지방재정 파급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중앙기능의 지방이양을 통해 증대될 것을 예정하고, 일정한 가정 하에서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지방재정과파급효과를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 지방소비세 도입은 우려할 만큼 지방세 불균형을 야기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지방세수 불균형이 현행보다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지방소비세 도입은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수 구조를 개선하여 세수 안정성과 신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하에서 지방소비세 도입은 다소나마 지방세입불균형을 조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소비세 도입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려면, 합리적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의 검토와 동시에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II. 세원의 선택

지방소비세를 도입한다고 할 때, 소비세원의 선택과 소비세수의 귀속, 과세권의 결정 등이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우선 본절에서는 지방소비세원으로 적합한 세원의 선택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세원분리원칙에 의해 국세와 지방세가 서로 세원을 공유하지 않는 독립세 형태로 되어 있다¹⁾. 그러나 국세와 지방세간에 세원의 분리여부에 따라 그 유형을 분류한다면 다양한 형태로 지방세를 유형화할 수 있다. 지방세의 형태는 <그림 1>에 나타난 것처럼, 과세권과 세수가 국세와 분리되어 있는 『세수분리방식』과 분리하고 있지 않은 『세수분배방식』의 두 개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세수분리방식은 또한 독립세와 같이 국세와 지방세를 분리하여 과세하는 독립방식과 부가세와 같이 국세와 중복하여 과세하는 중복방식으로 분리된다.

세수분배방식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과세권을 설정하고 그 세수를 양자가 나누는 공동방식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어느 쪽의 일방이 과세권을 가지고 세수를 나누는 이양방식이 있다. 이 중에 공동방식에서는 과세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기관의 존재가 필요하다. 이양방식은 크게 2개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나는 중앙정부가 과세권을 가지고 그 세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분여방식(分與方式)이다. 또 하나는 지방정부가 과세권을 가지고 그 세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앙정부에 이양하는 분부방식(分賦方式)이다.

지금까지 지방세라고 한다면 독립방식 결국 독립세가 이상으로 상정되어 왔다. 그것은 독

1) 대부분의 지방세목은 국세와 세원이 중복되지 않는 독립세 형태로 되어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민세 소득할은 세수분리방식중 중복방식에 속하며, 교통세는 세수분배방식중 분여방식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립세라야 지방정부에게 과세자주권이 있다고 생각되어 온 때문이다. 그러나 독립방식의 지방세라도 과세표준과 세율의 큰 골격을 중앙정부에서 결정하고 지방은 제한적 범위내에서만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권을 가진다면 지방정부에게 자율성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중복방식의 부가세형태에서는 세율을 중앙정부가 결정해 버린다. 그러나 중복방식에서도 세율에 제한이 가해져 있지 않다면 독립세방식이지만 과세표준이나 세율을 중앙정부가 결정해 버리는 경우에 비해서는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의 범위가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자료: 神野直彦, 分權時代の税源配分, 地方税, 1997, 10.

<그림 1> 중앙·지방간 세원배분 방식

공동방식에 있어서도 과세권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이나 세율이 통제된 형태의 독립세의 경우보다도 지방정부의 자기결정권이 크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양방식을 취하더라도 지방정부에게 부여되고 있는 결정권한에 따라서 과세표준이나 세율도 통제된 형태의 독립세의 경우보다 오히려 지방정부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관점에서 보아 바람직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지방세의 세율을 선택하는 경우에 독립세라는 과세형태에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지방세의 과세형태를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을 조정한 세원배분조정방식까지 고려한다면 지방세에 배분되는 세율은 비약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지방소비세가 명실상부한 지방세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세원배분방식의

선택이 필요하다. 그동안 지방소비세 도입과 관련하여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논의를 세원배분방식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크게 독립방식에 속하는 방안과 분여방식에 속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독립방식에 속하는 방안으로 지방특별소비세 신설, 일부 부가가치세원(음식업 등)의 지방이양 등이 있고, 분여방식에 속하는 방안으로는 부가가치세의 공동세원화, 교통세의 공동세원화가 있다.

중앙·지방간 세원배분방식은 각각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세원배분방식의 장단점을 학자와 전문가들이 제시한 대안과 관련하여 검토해 보기로 하자.

세수분리방식 중 중복방식은 현행 조세제도상 채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국가의 소비세원에 대하여 지방이 독자적으로 중복과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세율로 지방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된다. 생산지 원칙으로 징수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제하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중복과세의 허용은 타 지역으로 반출되는 상품에 대한 각 지역의 세율인상 경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복방식의 채택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표 1> 지방소비세 관련 논의

구 분	내 용
김대영 (1996)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가운데 유흥음식점, 숙박, 운송창고, 개인서비스업분 등을 지방소비세로 이양
김대영(2000, 2003)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소비세원화
김정훈 (1996)	음식, 숙박, 운수창고통신, 부동산 임대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그리고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등 특별소비세를 지방소비세화
오연천 (2000)	교통세의 공동세원화 부가가치세의 공동세원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의 일부 세원을 지방세원화
곽채기 (2000)	부가가치세(음식업, 숙박업), 특별소비세(특정한 장소의 출입)의 일부 세원을 분리하여 지방소비세 신설 부가가치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징세지주의 원칙에 따라 공동세원화)
원윤희 (2001)	담배소비세의 증가세화 마권세의 국세이양, 입장세의 지방세화
이영희 (2001)	음식업,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등 부가가치세의 일부 세원공유
최명근 (2001)	부가가치세의 공동세원화 도축세, 면허세, 입장세를 포함하여 지방특별소비세를 신설
이삼주 (2002)	부가가치세의 공동세원화

세수분리방식 중 독립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시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엄격한 세원분리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국의 실정에서 국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비세원은 거의 없다. 특히, 한국의 부가가치세가 일반소비세로서 거의 대부분의 소비세원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소비세원을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 포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이러한 소비세원을 포착한다고 하여도 그 세수는 극히 미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지방특별소비세의 경우는 지방세수 확충효과는 미약하면서 지방세체제만 교란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음식업등 지방소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지방이양도 사실상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소비와 과세가 연계되어 있는 다단계 소비세 형태의 현행 부가가치세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채택되기 어려운 대안이다.

세수분배방식 중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과세권을 설정하고 그 세수를 양자가 나누는 공동방식은 과세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기관의 존재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세무행정기관에서 조세를 과세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굳이 지방소비세의 과세를 위하여 별도의 행정기관을 신설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세수분배방식에서는 이양방식 중 분여방식이 고려의 대상이 된다. 분여방식에 속하는 대안으로서는 부가가치세의 공동세원화 방안과 교통세의 공동세원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교통세의 공동세원화는 이미 국세인 교통세가 지방세의 주행세와 공동세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미 도입되어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는 새로운 제도로써 검토대상은 아니라고 본다. 즉, 교통세와 공동세원으로 지방소비세를 도입한다면, 이는 국가와 지방간의 세원배분비율의 문제이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또한 교통세는 유통소비에만 국한되어 징수되는 세금으로 이는 지방의 소비증대가 지방세수의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장치로서 지방소비세의 의의에서 볼 때, 부가가치세의 공동세원화를 통한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에 비해 다소 열위에 있다. 그리고 수입품인 유통은 가격변화가 심하므로 교통세는 세수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세수의 충분성, 안정성 등을 고려한다면, 부가가치세원을 중앙과 지방이 공유하는 형태의 지방소비세 도입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중앙·지방간 세원분배방식은 중앙에서 과세하여 지방으로 세수를 이양하는 분여방식이 바람직 할 것이다.

대부분의 소비세원에 대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비세원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지방소비세의 신설은 세수확충 측면에서 거의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세수의 충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방소비세의 도입을 목표로 한다면,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중앙과 지방의 공동세원으로 하는 분여방식의 지방소비세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Ⅲ. 지방소비세수의 귀속

1. 생산지원칙과 소비지원칙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공동세원으로 하여 지방소비세를 도입한다고 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지방소비세수의 귀속지 결정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는 단단계 소비세로 전단계 매입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지방소비세의 귀속지를 어느 곳으로 할 것인가가 논의의 초점이 된다.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할 때, 지방소비세수를 부가가치가 생산된 지역에 귀속시킬 것이냐, 최종 소비된 지역에 귀속시킬 것이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국세인 부가가치세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세수의 귀속지의 문제가 지방소비세에서는 발생한다.

현행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매입세액 공제방식으로 부가가치가 생산된 지역에서 조세를 징수하므로 부가가치세의 징수지와 최종부담자의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다.

<표 2> 부가가치의 창조와 부가가치세 구조

생산및분배과정	원면(농부)	면사(방적회사)	면직물 (방직회사)	양복(양복점)	누계액
매출지	경북	대구	경남	부산	
판매가	400	700	1000	1200	
부가가치	400	300	300	200	1,200
매출가(세포함)	440	770	1100	1320	1,320
매출세액	40	70	100	120	
매입세액	0	40	70	100	
부가가치세	40	30	30	20	120
세의 귀속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세금납부자	농부	방적회사	방직회사	양복점	
납부자 부담액	0	70-30=40(회수)	100-30=70(회수)	120-20=100(회수)	
실제 부담자	방적회사	방직회사	양복점	양복구입자	
부담액	40	70	100	120	

자료: 김동건, 『현대재정학』, 2001, p. 358의 내용을 제작성

부가가치세액 120의 최종 부담자는 최종 소비자인 부산에 거주하는 양복 구입자이며, 생산자인 농부, 방적회사, 방직회사, 양복점은 매출시 받은 세금에서 자신들이 납부하였던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세무관서에 납부하므로 실질적으로 한푼의 부가가치세도 부담하지 않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부담은 부산의 양복구입자가 지지만 부산지역에는 20의 부가가치세만 징수되고 생산과정에 관련된 각 지역인 경북, 대구, 경남에 각각 40, 30, 30의

부가가치세수가 귀속된다. 따라서 현행 부가가치세 하에서 부가가치세와 세원을 공유하는 형태로 지방소비세를 도입한다면, 최종 세부담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이들이 부담한 세수를 귀속시키려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국세로서 부가가치세가 도입되어 있고 최종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모두 부담한다는 전단계매입세액공제방식이 채택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소비세수의 귀속지 결정은 소비지 원칙에 입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세부담자인 최종소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지방소비세수가 귀속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지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소비세를 도입한다면, 지방소비세수는 세를 부담한 소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귀속될 것이다. 그러면, 지역별 최종 소비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파악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 생산되어, 소비되었는지는 파악이 가능하지만, 특정지역과 부가가치의 생산이나 소비, 특히 최종소비를 정확히 연계시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특정지역의 최종 소비규모를 추계할 수 있는 대응변수가 필요하게 된다. 이것을 『소비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지방소비세에서 『소비지표』를 사용하는 것은 지방재정조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최종 소비자의 거주지역에 그들이 부담한 지방소비세수를 귀속시키기 위한 것이다. 1997년에 지방소비세가 도입된 일본의 사례가 우리나라의 지방소비세 도입에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 (<부록> 일본의 지방소비세 참조).

즉, 현행 부가가치세제 하에서 소비지 원칙에 입각한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세수를 소비지에 귀속시키기 위한 적합한 소비지표를 선정하여야 한다. 『소비지표』로는 부가가치세 소매업 과세표준(매출), 최종소비지출(민간)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이들 지표는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소비지표』의 선정은 정책당국의 정책목표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되 지방자치단체간 세수의 배분을 이들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소비지표』의 선정

1) 검토 대상

현실적으로 특정 지방에 당해 지방 몫인 지방소비세수를 귀속시키려면 최종소비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를 찾아야 한다.

우선 부가가치세액, 업종별 부가가치세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업종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부가가치세 관련 지표들이 검토대상이 되며, 다음으로는 최종소비지출(민간) 등 소

비관련 지표들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제 이들 지표들의 광역자치단체별 분포를 보고 『소비 지표』로서의 적합성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1) 부가가치세액

지방소비세의 세수 배분기준으로 자주 거론되는 것이 부가가치세액이다. 즉, 이는 국세청이 담당하는 지역에서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의 일정분(지방소비세 해당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비세로 이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행 생산지 원칙에 의해 징수되고 있는 부가가치세제 하에서 부가가치세액에 의한 지방소비세 배분은 소비지원칙이 아니라 생산지원칙에 의한 세수배분이다. 따라서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이 최종소비자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로 귀속되지 않는다. 즉, 세수부담지와 세수귀속지의 불일치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액을 지방소비세의 배분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본다.

<표 3> 광역자치단체별 부가가치세 신고(내국세 신고분)

(단위: 백만원)

구 분	법 인		일 반		간 이		부가가치세액
	납부할세액	환급할세액	납부할세액	환급할세액	납부할세액	환급할세액	
서울	12,556,706	8,197,128	2,560,692	860,404	28,840	378	6,088,328
부산	1,908,947	782,877	748,561	210,767	9,833	122	1,673,575
대구	1,131,743	398,619	497,567	142,215	4,334	61	1,092,749
인천	1,649,426	1,234,088	667,572	195,758	5,524	131	892,545
광주	915,453	341,999	176,656	68,103	2,119	65	684,061
대전	936,618	299,625	176,752	81,384	2,381	100	734,642
울산	1,367,190	1,601,147	218,187	37,046	1,732	43	-51,127
경기	6,262,452	5,070,200	2,109,382	918,668	19,526	414	2,402,078
강원	732,662	188,149	156,841	57,969	3,557	111	646,831
충북	891,999	625,151	179,078	62,595	2,805	72	386,064
충남	1,146,133	1,425,207	201,595	103,141	3,621	95	-177,094
전북	837,758	313,107	170,794	72,009	2,425	81	625,780
전남	726,899	1,186,033	130,056	57,815	2,042	70	-384,921
경북	1,346,721	1,754,203	377,406	107,850	4,248	95	-133,773
경남	1,719,589	1,671,998	650,968	186,604	5,246	149	517,052
제주	218,595	44,668	61,372	22,219	1,551	31	214,600
합계	34,348,891	25,134,199	9,083,479	3,184,547	99,784	2,018	15,211,39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4.

또한 생산지 원칙을 고수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일정분을 징수된 지역에 지방소비세로 귀속시킨다고 하여도 문제는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한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세금은 최종소비

자가 부담한다. 또한, 수출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므로 수출품을 생산 수출한 경우, 매출세액이 0이므로 여기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부가가치세액은 (-)가 되어 수출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 따라서 수출품 매출이 많은 지역의 경우 최종 부가가치세액이 (-)값을 갖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표 3> 참조). 따라서 생산지 원칙에 의한 지방소비세수 배분은 세수부담지역과 세수귀속의 불일치 문제를 야기할 뿐만아니라 이를 용인한다 하더라도 세수가 (-)인 지역이 존재하므로 현실적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2) 업종별 부가가치세액

다음으로 검토할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대상 업종 중 국지적 성격을 갖고 있는 업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로 이양받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부가가치세 대상업종은 14개 업종이다²⁾ 이러한 업종 중 지방세로 적합한 업종으로는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이 거론되고 있다(<표 4> 참조). 이러한 배경에는 부가가치세 창설당시 이들 업종에 과세되는 지방세인 유흥음식세가 국세인 부가가치세로 흡수 통합된 사실에 기인한다.

<표 4> 업종별 부가가치세액

(단위: 백만원)

구분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납부할세액	환급할세액	부가가치세액	납부할세액	환급할세액	부가가치세액	납부할세액	환급할세액	부가가치세액	납부할세액	환급할세액	부가가치세액
서울	667,655	411,532	256,123	392,675	55,069	337,606	59,451	43,342	16,109	2,689,588	449,076	2,240,512
부산	207,383	55,409	151,974	65,001	10,247	54,754	15,493	14,109	1,384	225,731	75,249	150,482
대구	187,251	18,959	168,292	33,432	3,579	29,853	5,729	9,514	-3,785	121,805	25,549	96,256
인천	142,773	31,286	111,487	48,877	5,539	43,338	3,932	8,243	-4,311	176,649	29,852	146,797
광주	148,242	16,594	131,648	20,264	2,977	17,287	2,769	5,095	-2,326	82,498	34,547	47,951
대전	79,292	18,228	61,064	24,666	2,170	22,496	3,987	6,555	-2,568	92,620	21,990	70,630
울산	52,427	7,468	44,959	21,820	1,415	20,405	1,909	2,915	-1,006	55,685	7,597	48,088
경기	486,002	139,869	346,133	195,817	30,014	165,803	16,023	28,828	-12,805	643,434	127,599	515,835
강원	98,191	12,715	85,476	23,865	1,796	22,069	7,501	12,432	-4,991	78,988	22,508	56,480
충북	59,027	15,063	43,964	18,028	3,294	14,734	3,218	4,542	-1,324	59,238	11,014	48,224
충남	66,391	20,550	45,841	28,080	2,548	25,532	4,652	12,870	-8,218	74,015	12,672	61,343
전북	64,252	20,647	43,605	16,860	2,431	14,429	5,750	6,558	-808	58,720	17,745	40,975
전남	51,438	17,793	33,645	13,815	1,188	12,627	3,555	9,073	-5,518	56,088	11,539	44,499
경북	80,697	28,015	52,682	32,423	1,463	30,960	7,782	8,632	-850	97,671	19,037	78,634
경남	142,387	36,380	106,007	49,346	5,724	43,622	6,182	14,516	-8,334	136,657	26,290	110,367
제주	17,786	7,381	10,405	12,816	728	12,088	15,350	7,976	7,374	40,935	7,080	33,855
합계	2,551,194	857,889	1,693,305	997,785	130,182	867,603	163,283	195,200	-31,917	4,690,272	899,344	3,790,928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4

2) 부가가치세 대상업종은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도매업, 건설업, 농수임어업, 광업, 부동산판매업, 운수창고 통신업, 부동산 임대업 및 대리중개도급업의 14개 업종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업종에서 생산한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방으로 이양받아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전체 부가가치세액에 의한 지방소비세 배분과 마찬가지로 업종별 부가가치세액에 의한 세수 귀속도 소비지원책이 아니라 생산지원책에 의한 세수배분에 속한다. 따라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이 소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소비지 원칙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업종별 부가가치세액을 지방소비세의 배분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본다.

둘째, 생산지원책을 고수한다고 하여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숙박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최종 부가가치세액이 (-)로 나타나는 지방이 있어, 이를 지방세원으로 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셋째, 음식업등 특정 업종에 대해 별도 지방세목을 신설하여 이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데, 최종 부가가치액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전단계 매입세액 공제방식을 취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 체계 하에서 특정 업종분을 지방분으로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체계를 교란할 우려가 있다.

3) 부가가치세 소매업 과세표준(매출)

전체 부가가치세액이나 업종별 부가가치세액을 징수된 지역의 지방소비세수로 귀속시키는 것은 소비지원책에 위배되고, 또한 생산지 원칙을 고수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세수가 (-) 값을 갖는 경우가 있어 채택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관련 통계 중 『소비지표』로 부가가치세 소매업 과세표준(매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부가가치세 소매업 과세표준(매출)은 소비지 원칙에 적합한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소매업 매출이 대부분 최종 소비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어느 지역의 소매업 과세표준(매출)은 그 지역에서 최종 소비된 가치의 규모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소매업 과세표준(매출)도 최종 단계 부가가치액뿐만 아니라, 중간단계의 부가가치액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소매업의 성격상 소매행위가 대부분 최종소비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과세표준이 과장되는 정도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표 5> 광역자치단체별 부가가치세 소매업 과세표준(매출)

(단위: 백만원, %)

구분	소매업 과표(매출)	비중	구분	소매업 과표(매출)	비중	구분	소매업 과표(매출)	비중
서울	29,978,029	26.30	울산	2,832,653	2.49	전남	2,905,076	2.55
부산	7,876,644	6.91	경기	21,826,193	19.15	경북	5,240,865	4.60
대구	6,800,078	5.97	강원	3,803,103	3.34	경남	6,608,140	5.80
인천	5,730,204	5.00	충북	3,347,389	2.94	제주	1,292,580	1.13
광주	4,564,380	4.01	충남	3,900,596	3.42			
대전	3,642,897	3.20	전북	3,643,483	3.20	합계	113,965,315	100.0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4.

4) 최종소비지출(민간)

소비지표로 적합한 것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지역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 중 「최종소비 지출(민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역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을 최종소비지출, 총자본형성, 재화와 서비스순이출 등으로 구성되며 최종소비지출은 민간(가계,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부문의 최종소비지출과 정부부문의 최종소비지출로 구성된다. 현행 우리나라 통계자료 중 지역별로 소비규모를 나타낸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료는 통계청의 최종소비지출(민간)이 거의 유일하다. 이 지표는 부가가치세 관련 지표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지표는 국가기관인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지방소비세 도입시 세무행정비용이 크게 소요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과거에는 최종소비지출(민간)은 5년에 한번씩 추계되었으나 최근에는 매년 추계하여 발표하고 있다.

<표 6> 광역자치단체별 최종소비지출(민간)

(단위: 백만원, %)

구분	최종소비지출(민간)	비중	구분	최종소비지출(민간)	비중	구분	최종소비지출(민간)	비중
서울	99,133,067	25.16	울산	8,404,833	2.13	전남	13,513,838	3.43
부산	30,368,839	7.71	경기	81,063,252	20.58	경북	20,485,417	5.20
대구	20,888,118	5.30	강원	11,054,103	2.81	경남	23,390,238	5.94
인천	20,747,518	5.27	충북	10,568,496	2.68	제주	4,000,052	1.02
광주	11,380,955	2.89	충남	13,440,123	3.41			
대전	11,728,256	2.98	전북	13,777,537	3.50	합계	393,944,642	100.00

자료: 통계청, 2003년 시도별 지역내 총생산 및 지출, 2005.

5) 인구

지금까지 논의한 부가가치세 소매업 과세표준(매출), 최종소비지출(민간) 등이 당해 지역의 소비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적합하지만, 그 분포의 불균형도가 높아 세원의 편재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을 때, 인구를 『소비지표』로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인구는 소비와 상관관계가 높으며 또한 정확한 자치단체별 통계치를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표 7> 광역자치단체별 인구 분포(2004. 1. 1)

(단위: 명, %)

구분	인구수	비중		인구수	비중	비중	인구수	비중
서울	10,174,265	21.03	울산	1,072,867	2.22	전남	2,017,730	4.17
부산	3,691,445	7.63	경기	10,206,851	21.09	경북	2,720,832	5.62
대구	2,529,554	5.23	강원	1,527,034	3.16	경남	3,139,013	6.49
인천	2,570,194	5.31	충북	1,489,635	3.08	제주	552,297	1.14
광주	1,395,762	2.88	충남	1,912,803	3.95			
대전	1,432,296	2.96	전북	1,954,430	4.04	합계	48,386,998	100.00

자료: <http://www.mogaha.go.kr>.

그리고 인구를 『소비지표』로 선정하여 배분한다는 것은 광역자치단체간 1인당 지방소비세 수를 동일하게 배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소비세 도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불만도 크게 완화할 수 있다.

2) 소비지표의 선정

지금까지 지방소비세수를 최종 소비지에 귀속시키기 위한 『소비지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지표들을 살펴 보았다. 이들 중에서 지방소비세의 지표로서 바람직한 것은 부가가치세 소매업 과세표준(매출)과 최종소비지출(민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부가가치세 소매업 과세표준(매출)이나 최종소비지출(민간)은 그 지역의 소비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방소비세수 귀속의 소비지원칙에 적합하다.

둘째, 국세청과 통계청에서 이들 자료를 집계하고 있으므로 사용이 용이하다. 이는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어도 기존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지방의 세무행정비용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고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부가가치세 소매업 과세표준(매출)과 최종소비지출(민간)은 광역자치단체별 집중도가 현행 지방세보다 낮다. 광역자치단체별 집중도가 현행 지방세보다 낮다는 사실은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었을 때 지방세수 불균형을 심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 광역자치단체별 세수불균형이 심화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었는데, 실제 분석결과는 이를 뒷받침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소비세수의 불균형을 크게 야기하지 않으면서, 지방소비세 도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인구도 「소비지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들 3가지 지표 외에도 지금까지 논의된 지표들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조합한 지표를 「소비지표」로 선정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외국의 예를 보아도 일본의 경우 지방소비세 배분을 위한 「소비에 상당하는 액」을 산정하는 데 인구를 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부록> 일본의 지방소비세 참조).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공동세원(연방과 주간 배분비율 65.0% : 35.0%)으로 활용하며, 주정부 귀속분 중 25.0%는 역교부금재원으로 활용하고 75.0%는 인구를 배분기준으로 하여 주별로 배분한다.

IV. 과세권의 결정

부가가치세를 중앙과 지방의 공동세원으로 하여 지방세목을 신설하는 형태로 지방소비세를 도입한다면, 중앙과 지방간의 세원배분은 결정되었다. 다음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어느 쪽이 지방소비세의 과세권을 갖느냐를 검토하여야 한다. 즉, 지방소비세를 광역자치단체세(시도세)로 하느냐 기초자치단체세(시군구세)로 하느냐를 논의하기로 한다. 이 논의는 지방분권화에 따라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양될 기능의 성격과 규모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중앙으로부터 이양되는 기능이 주로 광역자치단체로 이양된다면, 이에 따른 재원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는 시도세를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앙으로부터 기능이양이 주로 기초자치단체에 이양되든지, 아니면 광역자치단체에 이양되더라도 이것이 기초자치단체에 재위임될 성격의 기능이라면 지방소비세는 시군구세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양될 기능의 성격과 규모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 또한 중앙기능의 지방이양은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의 하나의 계층에만 이양되는 것이 아니라 광역·기초 양계층에 모두에게 발생한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에게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세입 확충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방소비세가 어떤 형태로 도입되든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재원의 일부가 이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지방소비세가 시도세로 도입된다면,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재원이 이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역으로 시군구세로 도입된다면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재원이 이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재원이전은 상위 행정계층에서 하위 행정계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소비지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소비세의 세수를 귀속시킨다면, 시군구세 형태의 지방소비세도입은 어렵다. 왜냐하면, 현행 우리나라 통계제도하에서 소비관련 통계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만 집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구를 『소비지표』로 선정하는 경우 외에는 시군구세 형태의 지방소비세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지방소비세는 광역자치단체세로 도입하고, 광역·기초간 기능이양에 상응하는 재원조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소비세의 과세권자를 광역자치단체로 한다면, 시도세인 지방소비세수를 광역·기초간 배분하는 방안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현행 광역·기초간 재정조정제도의 활용이다. 이는 시도의 지방소비세수의 일부를 재정보전금제도, 조정교부금 제도를 활용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안이다. 즉, 도의 지방소비세수 중 일부를 재정보전금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시군에 배분하고, 특별·광역시의 지방소비세수 중 일부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하여 자치구에 배분하는 방안이다. 이때 재정보전금이나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편입되는 비율 등은 중앙으로 부터의 기능이양의 성격, 규모, 개별 시도의 재정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둘째, 지방소비세 도입과 관련하여 새로운 광역·기초간 세수배분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 방안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대안이 제시될 수 있다. 대안의 유형은 광역·기초간 배분비율, 배분기준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고, 또한 광역·기초간에도 시와 도를 달리 할 것인지, 동일하게 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는 대안에 따라 세원배분 내역은 달라 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검토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중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광역·기초간 재정조정제도를 준용하여 지방소비세수를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다. 국가와 지방간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등의 형태로 국가로부터 지방으로의 재원이전이 있는 것과 유사하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도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기초자치단체로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시도비 보조금의 형태로 재원이전이 발생한다. 이와같은 재정조정제도가 존재함으로써 지방소비세도입은 단순히 국세의 부가가치세원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지방세수 증가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지방소비세 도입은 지방세수 뿐만아니라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등 지방세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지방세수 도입으로 인한 세입배분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지방소비세 도입을 시도세의 증가에 준해서 기초에 재원이 배분되는 것으로 하여 광역과 기초간 재원배분을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첫째, 지방소비세는 시도세로 도입이 되므로 시도의 지방세수가 증가한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지방세수에는 변화가 없다.

둘째, 현행 지방재정제도하에서 시도세가 증가하면 도에서는 도세를 징수한 시와 군에 당해 시군이 징수한 도세(도세총액에서 공동시설세와 지방교육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27% (47%)³⁾해당액을 재원으로 재정보전금을 교부한다. 따라서 현행 재정보전금제도를 준용하여 지방소비세수를 재정보전금의 재원으로 사용한다면, 도에 배분된 지방소비세액의 27% (47%) 해당액이 시군으로 이전된다. 이렇게되면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도의 재원편중현상이 다소 해소될 것이다.

셋째, 특별·광역시인 취득세, 등록세의 50%상당액을 재원으로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을 교부하고 있다.⁴⁾ 따라서 지방소비세수를 특별·광역시가 자치구에 이전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사용한다면, 특별·광역시와 자치구간의 재원편중 현상도 해소될 것이다.

넷째, 도와 특별시·광역시의 경우는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지방세수가 증가하고, 이는 지방교부세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재정수입을 증가시켜 지방교부세가 감소시킨다. 또한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교부단체에서 불교부단체로 전환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시군구의 경우는 지방소비세가 광역자치단체세이므로, 직접적으로 지방세수가 증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시군은 광역자치단체에 교부되던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므로 조정율이 상향되어 보통교부세가 증가한다. 그러나 자치구에는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으므로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보통교부세는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방소비세 도입은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3) 재정보전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24조의 2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시도지사(특별시장을 제외한다)는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공동시설세를 제외한다)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금으로 확보하여 인구, 징수실적, 당해 시·군의 재정사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시·도(특별시를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안의 시·군에 배분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법 제160조에서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시세 수입중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안에 있는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특별·광역시는 조례(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내외 해당액을 사용하고 있다. 각 특별·광역시별 비율은 다음과 같다. 서울(50%), 부산(51%), 대구(55%), 인천(50%), 광주(70%), 대전(68%), 울산(30%).

되는 내국세수를 감소시키므로 특별교부세 규모가 감소되어 적게나마 영향을 받는다.

지방소비세를 시도세로 도입하되, 현행 광역·기초간 재정조정제도의 근간인 재정보전금제도와 조정교부금제도를 준용하여 지방소비세수를 광역·기초간 자원배분의 재원으로 사용한다면,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자치단체 계층간의 자원편중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자치단체간 재원의 변화를 계정과목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표 8> 지방소비세 도입의 지방세입 파급효과

구분	지방세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기준재정수요	기준재정수입		
시	분청	(+)	0	0	(+)	(+)	(-)
	자치구	0	0	(+)	0	0	(-)
	군	0	(+)	0	0	(+)	(-)
도	분청	(+)	0	0	(+)	(+)	(-)
	시	0	(+)	0	0	(+)	(-)
	군	0	(+)	0	0	(+)	(-)

주: (+)는 증가, (-)는 감소, 0는 변동없음

이와 같이 현재 중앙과 지방간의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유사하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도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제도를 재정조정제도가 존재한다. 따라서 지방소비세는 시도세로 도입하고 기능이양 정도(중앙에서 광역자치단체, 중앙으로부터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기초자치단체로의 기능이양을 모두 포함)에 따라 이들 재정조정제도를 활용하여 광역과 기초간의 재정조정을 통해 재원을 배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V. 지방재정 파급효과 분석

1. 지방세수 확충효과

1) 지방세수

지방소비세 도입은 지방세수 확충뿐만아니라 지방교부세등에도 영향을 미쳐 지방재정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우선 지방소비세도입의 효과를 지방세수 확충효과와 지방자치단체간 세수

형평화효과, 지방세수 구조 변화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효과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첫째, 지방소비세의 규모는 부가가치세 총액의 10%로 하며, 광역자치단체세인 시도세로 도입한다. 즉, 2003년 결산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총액 33조 4,470억 38백만원의 10%인 3조 3,447억 4백만원의 재원이 지방소비세로 지방에 이양되는 것으로 가정한다.⁵⁾

둘째, 지방소비세 배분을 위한 「소비지표」로 「부가가치세 소매업 과세표준(매출)」(이하 소매업 과표), 「최종소비지출(민간)」(이하 최종소비지출)을 「소비지표」로 사용한다. 지방소비세 배분 「소비지표」로 소매업과표 등을 사용한다는 것은 최종 소비자의 세부담지와 세수의 귀속지를 일치시키기는 소비지원칙의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2003년 결산기준으로 지방세수는 33조 1,329억 43백만원이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특별·광역시 지방세수가 17조 4,327억 55백만원이며, 도 지방세수가 15조 7,001억 87백만원이다. 앞에서 분석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가정한 것처럼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 이전되는 지방소비세수 총액은 부가가치세수 33조 4,470억 38백만원의 10% 해당액인 3조 3,447억 4백만원이다. 이러한 재원을 이전받아 소매업 과표, 최종소비지출(민간)을 「소비지표」로 하여 지방에 배분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전체적으로는 10.09%의 지방세수 확충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시도별 지방세수 확충효과는 「소비지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특별·광역시는 「소비지표」별로 소매업과표 10.34%, 최종소비지출 9.87%순으로 나타나며, 도는 최종소비지출 10.34%, 소매업과표 9.83% 순으로 나타난다. 지방소비세 도입의 지방세수 확충효과는 소매업 과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도보다는 특별·광역시에 크게 나타나며, 최종소비지출을 「소비지표」로 사용할 경우에는 도가 특별·광역시보다 세수확충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각 「소비지표」별로 지방세수 확충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향후 지방소비세 도입시 「소비지표」선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지방소비세수규모를 결정할 지방소비세 세율은 지방분권화 추진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지방경찰, 지방교육 등), 지방업무영역의 확대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대안이 가능하지만 본 연구에 최근 주로 제시되고 있는 부가가치세액의 10%를 이양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한다는 방안을 중심으로 지방재정과급효과를 분석하였다.

<표 9> 지방세수 확충효과(지방세 총액)

(단위: 백만원, %)

구분	현행 지방세수(A)	소비지표			
		소매업과표(B)	확충율(B/A)	최종소비지출(C)	확충율(C/A)
서울	9,813,152	879,808	8.97	841,668	8.58
부산	2,255,064	231,167	10.25	257,840	11.43
대구	1,466,046	199,572	13.61	177,346	12.10
인천	1,550,572	167,380	10.79	176,152	11.36
광주	723,551	133,957	18.51	96,628	13.35
대전	904,146	106,913	11.82	99,576	11.01
울산	720,223	83,134	11.54	71,359	9.91
경기	8,251,187	640,565	7.76	688,250	8.34
강원	762,126	111,615	14.65	93,853	12.31
충북	732,413	98,241	13.41	89,730	12.25
충남	1,076,601	114,476	10.63	114,111	10.60
전북	742,063	106,931	14.41	116,975	15.76
전남	773,130	85,259	11.03	114,736	14.84
경북	1,261,304	153,811	12.19	173,927	13.79
경남	1,714,012	193,939	11.31	198,590	11.59
제주	387,351	37,935	9.79	33,962	8.77
시계	17,432,755	1,801,932	10.34	1,720,571	9.87
도계	15,700,187	1,542,772	9.83	1,624,133	10.34
총계	33,132,943	3,344,704	10.09	3,344,704	10.09

이러한 지방세수 확충효과를 개별 광역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매업 과표를 사용한 경우, 가장 지방세수 확충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자치단체는 광주로 18.51%이다. 다음으로 강원(14.65%), 전북(14.41%), 대구(13.61%), 충북(13.41%), 경북(12.19%), 대전(11.82%), 울산(11.54%), 경남(11.31%), 전남(11.03%), 인천(10.79%), 충남(10.63%), 부산(10.25%) 순이다. 이들 13개 자치단체는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10%이상의 지방세수 확충효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제주(9.79%), 서울(8.97%), 경기(7.76%)의 지방세수 확충효과는 10%에 미달한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서울과 경기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수 규모가 가장 크나 서울, 경기도의 현행 지방세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증가되는 정도는 작게 나타나는 것이다. 즉, 이는 지방소비세의 배분기준이 되는 소매업과표의 분포가 현행 지방세수분포보다 형평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6)

2) 시도세수

지방소비세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세 형태로 도입되므로 시도별 시도세수 확충효과를 살펴 보기로 하자. 특별·광역시에는 『소비지표』별로 소매업과표 11.57%, 최종소비지출 11.04% 순으로 나타나며, 도는 최종소비지출 17.76%, 소매업과표 16.87% 순으로 나타난다. 지방소비세 도입의 시도세수 확충효과는 특별·광역시보다는 도에 크게 나타난다. 이것은 도의 지방세목(7개 세목)이 특별·광역시의 지방세목(13개 세목)보다 적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특별·광역시는 소매업 과표를 사용할 경우에 확충효과가 크며, 도는 최종소비지출을 『소비지표』로 사용할 경우에 세수확충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표 10〉 지방세수 확충효과(지방세 총액)

(단위: 백만원, %)

구분	현행 지방세수(A)	소비지표			
		소매업과표(B)	확충율(B/A)	최종소비지출(C)	확충율(C/A)
서울	8,843,281	879,808	9.95	841,668	9.52
부산	2,008,853	231,167	11.51	257,840	12.84
대구	1,297,461	199,572	15.38	177,346	13.67
인천	1,384,362	167,380	12.09	176,152	12.72
광주	648,206	133,957	20.67	96,628	14.91
대전	824,385	106,913	12.97	99,576	12.08
울산	572,743	83,134	14.52	71,359	12.46
경기	5,391,055	640,565	11.88	688,250	12.77
강원	382,257	111,615	29.20	93,853	24.55
충북	362,269	98,241	27.12	89,730	24.77
충남	589,626	114,476	19.42	114,111	19.35
전북	352,508	106,931	30.33	116,975	33.18
전남	334,052	85,259	25.52	114,736	34.35
경북	557,353	153,811	27.60	173,927	31.21
경남	934,949	193,939	20.74	198,590	21.24
제주	242,673	37,935	15.63	33,962	13.99
시계	15,579,290	1,801,932	11.57	1,720,571	11.04
도계	9,146,741	1,542,772	16.87	1,624,133	17.76
총계	15,579,290	3,344,704	21.47	3,344,704	21.47

- 6) 『소비지표』별로 지방소비세로 도입으로 인한 지방세수 확충효과가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소매업과표를 『소비지표』로 사용한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최종소비지출(민간)을 『소비지표』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지방소비세 도입의 지방세수 확충효과를 개별 광역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매업 과표를 사용한 경우, 가장 지방세수 확충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자치단체는 전북으로 30.33%이다. 다음으로 강원(29.20%), 경북(27.60%), 충북(27.12%), 전남(25.52%), 경남(20.74%), 광주(20.67%), 충남 (19.42%), 제주(15.63%), 대구(15.38%), (14.52%), 대전(12.97%), 울산인천(12.09%), 경기(11.88%), 부산(11.51%), 경기(11.88%)순이다. 이들 15개 자치단체는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10%이상의 지방세수 확충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서울(9.95%)의 시도세수 확충효과는 10%에 미달한다.

2. 지방세수 형평화효과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세수 형평화 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지방소비세는 재정 형평화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교부세와 달리 지방세수확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 소비세가 지방세수 형평화 기능을 할 것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간 세수격차나 세입격차가 큰 상황에서 지방소비세 도입이 지방자치단체간 세수불균형을 크게 악화시켜서는 안된다고 본다.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자치단체간 세수형평화 효과를 변이 계수를 이용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변이계수는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값으로 그 값이 적을수록 공평한 분포를 나타낸다. 지방세수를 대상으로 변이계수를 살펴보면, 변이계수값은 지방소비세 도입전에 1.296722이었다. 그런데 지방소비세를 도입한 후 변이계수값은 다소 낮아졌다. 즉, 소매업 과표를 『소비지표』로 사용하였을 경우의 변이계수는 1.272684이고, 최종소비지출을 『소비지표』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1.273273으로 낮아졌다. 이는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시도간 지방세수 분포의 불평등도가 다소 완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상대적으로 소매업과표를 지표로 사용했을 경우가 최종소비지출을 지표로 사용했을 때보다 형평화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분석대상이 1인당 지방세수, 시도세수, 1인당 시도세수로 바뀌어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1인당 지방세수의 경우 지방소비세 도입전에 변이계수는 0.241361이었다. 그런데 지방소비세를 도입한 후 변이계수값은 다소 낮아졌다. 즉, 소매업 과표를 『소비지표』로 사용하였을 경우의 변이계수는 0.225964이고, 최종소비지출(민간)을 『소비지표』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0.223815로 낮아졌다.

시도세수의 경우 지방소비세 도입전에 변이계수는 1.448962이었다. 그런데 지방소비세를 도입한 후 변이계수값은 다소 낮아졌다. 즉, 소매업 과표를 『소비지표』로 사용하였을 경우의 변이계수는 1.399410이고, 최종소비지출(민간)을 『소비지표』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1.398536으로 낮아졌다.

1인당 시도세수의 경우, 지방소비세 도입전에 변이계수는 0.442519이었다. 그런데 지방소비세를 도입한 후 변이계수값은 다소 낮아졌다. 즉, 소매업 과표를 『소비지표』로 사용하였을 경우의 변이계수는 0.397427이고, 지역내 총지출을 『소비지표』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0.393220으로 낮아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방소비세 도입이 적어도 현재보다 지방세수 불균형을 악화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1> 형평화효과 : 변이계수

구 분		지방세수	1인당지방세수	시도세수	1인당시도세수
도 입 전		1.296722	0.241361	1.448962	0.442519
도입후	소매업과표	1.272684	0.225964	1.399410	0.397427
	최종소비지 출	1.273273	0.223815	1.398536	0.393220

3. 지방세입확충효과

지방세입구조는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지방소비세 도입을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서 재정세입 확충효과를 분석하였다.

첫째, 기존의 제도를 준용하는 것을 가정하였으므로 지방소비세도입으로 인한 지방세수 증대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서만 발생하고 시군구에는 직접적인 세수증대효과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를 재원으로 공동세 형태로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것을 가정하였으므로 지방소비세수 규모는 3조 3,447억 4백만원이 된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규모는 현재 13조 3,704억 11백만원에서 지방소비세수의 15% 해당액인 5,017억 5만원이 감소하여 12조 8,687억 6백만원으로 그 규모가 축소된다. 이와같이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지방재정은 2조 8,429억 99백만원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지방재정규모는 현행 96조 5,749억 27백만원에서 2.94% 증가한 99조 4,179억 25백만원이 된다.

둘째, 도의 경우 지방소비세수의 27%(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일반구가 설치된 시의 경우 47%)해당액을 시군의 재정보전금 재원으로 사용한다. 이때 증액된 재정보전금은 기존의 배분방식에 따라 시군에 교부한다. 군이 설치된 광역시의 경우에는 해당 군이 징수한 광역시세

비율 상당분에 해당하는 재원을 재정보전금으로 교부한다.⁷⁾ 특별·광역시(본청)의 경우는 지방소비세수의 일정분을 자치구의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사용하되 그 배분규모는 기존의 조정교부금 재원 결정비율을 적용한다.

셋째, 부가가치세와 공동세 형태의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지방소비세수의 15% 해당액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넷째, 도의 지방소비세수증가는 보통교부세규모에 변화를 준다. 우선 도세의 증가는 지방교부세의 기준재정수입의 증가요인(지방소비세 총액의 80%)으로 반영된다. 그리고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금 교부는 교부액 만큼을 도의 기준재정수요에 보정수요로 계상한다. 특별·광역시의 경우에는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 교부가 지방교부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특별·광역시 교부에 합산 산정). 그러나 지방소비세의 도입의 경우는 특별·광역시에 신규 세원이 증가하는 것이므로 지방소비세 총액의 80% 해당액을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입의 증가로 계상하였다. 이러한 가정은 기존의 지방재정제도인 재정보전금제도, 지방교부세 제도를 그대로 준용한 것이다.

지방소비세 도입의 자치단체 계층별 세입확충효과를 소매업 과표를 『소비지표』로 지방소비세를 배분한 경우를 중심으로 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지방세입은 2.94% 증가한다. 즉, 지방세수는 3조 3,447억 4백만원(3.36%)증가하고 지방교부세는 5,017억 5백만원(0.58%) 감소하여 순수하게 지방세입이 증대하는 것은 2조 8,429억 99백만원(2.94%)증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계층별로는 지방세입확충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우선 특별·광역시(본청)의 경우는 지방소비세의 도입으로 지방세수는 1조 8,019억 32백만원이 증가한다. 그러나 특별·광역시(본청)는 지방세수 증가분의 50%정도인 9,546억 85백만원을 조정교부금으로 자치구에 교부하고, 또한 군이 설치된 광역시는 74억 10백만원을 군에 재정보전금으로 교부한다. 그리고 특별·광역시(본청)가 교부받던 지방교부세는 교부세 재원의 감소, 기준재정수요증가(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 해당액), 기준재정수입증가(지방소비세수 증가액의 80%) 등의 과정을 통해 1,567억 91백만원이 감소한다. 따라서 특별·광역시(본청)의 순수한 재정증가는 현재 지방세입 17조 6,331억 59백만원의 3.87%에 해당하는 6,830억 46백만이 증가하여 18조 3,162억 5백만원이 된다.

다음으로 자치구는 직접적으로 지방세수가 증가하는 것은 없지만, 특별·광역시(본청)의 지방소비세수 증가분의 50%정도인 9,546억 85백만원을 조정교부금으로 이전받아 재정이

7) 광역시 군에 교부되는 재정보전금의 규모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당해 군에서 징수한 광역시세 징수액- 지방교육세액 - 공동시설세액)/(광역시의 시세 총액- 지방교육세총액 - 공동시설세총액)}*27%

증대한다. 또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않으므로 지방교부세 규모의 변화는 없다. 따라서 자치구는 지방소비세 도입전에 순계기준 세입규모 10조 7,985억 31백만원의 8.84%해당액인 9,546억 85백만원이 증가하여 지방소비세 도입후 세입규모는 11조 7,532억 16백만원으로 증대된다.

다음으로 광역시의 군도 직접적으로 지방세수가 증가하는 것은 없지만, 특별·광역시(본청)의 지방소비세수 증가분 중 74억 10백만원을 재정보전금으로 이전받아 세입이 증대한다. 또한 군은 특별·광역시(본청)와 도(본청)가 지방소비세수의 80%해당액 만큼 기준재정수입이 증가 등을 이유로 보통교부세 교부액이 감소하게 되는 것에 대한 반사적 이익과 재정보전금이 증가되면 재정보전금중 일반재정보전금이 기준재정수입의 증가로 나타나게 되어 지방교부세가 5억 7백만원 감소한다. 따라서 광역시 군은 지방소비세 도입전에 순계기준 세입규모 1조 452억 3백만원의 0.66%해당액인 69억 3백만원이 증가하여 1조 521억 6백만원이 된다.

도(본청)의 경우는 지방소비세의 도입으로 지방세수는 1조 5,427억 72백만원이 증가한다. 그러나 도는 지방세수 증가분의 27% 해당액인 4,165억 48백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시에 3,389억 26백만원, 군에 776억 22백만원을 재정보전금으로 교부한다. 그리고 도(본청)가 교부받던 지방교부세는 교부세 재원의 감소, 기준재정수요증가(조정교부금 해당액), 기준재정수입증가(지방소비세수 증가액의 80%) 등의 과정을 통해 재원부족액 감소, 불교부단체 전환 등으로 3,419억 66백만원이 감소한다. 따라서 도(본청)의 순수한 세입증가는 현재 지방세입 13조 308억 20백만원의 6.02%에 해당하는 7,842억 57백만이 증가한 13조 8,150억 77백만원이 된다.

다음으로 시는 직접적으로 지방세수가 증가하는 것은 없지만, 도의 지방소비세수 증가분 중 27%(47%)해당액을 재원으로 교부하는 재정보전금 중 시에 교부되는 3,389억 26백만원을 조정교부금으로 이전받아 재정이 증대한다. 또한 시는 보통교부세를 종전보다 적게 교부받게 되는데, 이는 시의 경우 재정보전금이 시의 기준재정수입의 보정수입으로 가산되기 때문이다. 시의 감소되는 지방교부세 규모는 642억 39백만원이 된다. 따라서 시는 지방소비세 도입전에 순계기준 재정규모 33조 2,011억 59백만원의 0.83%해당액인 2,746억 87백만원이 증가하여 33조 4,758억 46백만원이 된다.

다음으로 군은 직접적으로 지방세수가 증가하는 것은 없지만, 도의 지방소비세수 증가분 중 776억 22백만원을 재정보전금으로 이전받아 세입이 증대한다. 또한 군은 보통교부세를 종전보다 더 교부받게 되는데, 특별·광역시와 도가 지방소비세수의 80%해당액 만큼 기준재정수입이 증가 등을 이유로 보통교부세 교부액이 감소하게 되는 것에 대한 반사적 이익으로 지방교부세가 611억 96백만원 증가한다. 따라서 군은 지방소비세 도입전에 순계기준 세

입규모 20조 8,660억 55백만원의 0.67%해당액인 1,394억 18백만원이 증가하여 21조 54억 73백만원이 된다.

이렇게 지방소비세제도가 도입되면 직접적으로 지방세수가 증대하는 특별·광역시와 도에만 세입변화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광역·기초간의 재원 이전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도 세입의 변화가 발생한다. 그리고 세입증대의 효과는 자치구가 8.84%로 가장 크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도(6.02%), 특별·광역시(3.87%), 시(0.83%), 군(0.67%), 광역시군(0.66%)순으로 세입증가효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세입의 변화 패턴은 『소비지표』로 최종소비지출(민간)을 사용했을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표 12> 지방세입 증감효과 : 소매업과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현행 세입	세입증감효과						도입후 세입규모	
		지방소비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세입증감	증감율		
시	본청	17,633,159	1,801,932	-954,685	-7,410	-156,791	683,046	3.87	18,316,205
	구	10,798,531	-	954,685	-	-	954,685	8.84	11,753,216
	군	1,045,203	-	-	7,410	-507	6,903	0.66	1,052,106
도	본청	13,030,820	1,542,772	-	-416,548	-341,966	784,257	6.02	13,815,077
	시	33,201,159	-	-	338,926	-64,239	274,687	0.83	33,475,846
	군	20,866,055	0	0	77,622	61,796	139,418	0.67	21,005,473
합계	96,574,927	3,344,704	-	-	-501,705	2,842,999	2.94	99,417,925	

<표 13> 지방세입 증감효과 : 최종소비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현행 세입	세입증감효과						도입후 세입규모	
		지방소비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세입증감	증감율		
시	본청	17,633,159	1,720,571	-910,188	-7,288	-145,396	657,699	3.73	18,290,857
	구	10,798,531	-	910,188	-	-	910,188	8.43	11,708,720
	군	1,045,203	-	-	7,288	-125	7,163	0.69	1,052,366
도	본청	13,030,820	1,624,133	-	-438,516	-360,369	825,248	6.33	13,856,068
	시	33,201,159	-	-	357,612	-65,669	291,943	0.88	33,493,102
	군	20,866,055	-	-	80,904	69,853	150,757	0.72	21,016,812
합계	96,574,927	3,344,704	-	-	-501,705	2,842,999	2.94	99,417,925	

현행 지방세입의 시도별 비중을 살펴보면, 특별·광역시의 세입이 30.52%, 도의 세입이 69.4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 본 지방세수 분포에서 특별·광역시의 지방세수가 60.59%로 도의 지방세수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과 대비된다. 이와 같이 지방세입의 분포에서 도의 세입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통해 도와 시군으로 많은 재원이 배분되기 때문이다. 지방소비세 도입후 전체적으로 지방세입이 증대하지만, 그 정도는 다르다. 이러한 상대적 세입구조 변화를 지방세입 비중의 변화로 살펴보면, 소매업과표를 『소비지표』로 사용한 경우 특별·광역시의 세입은 현재보다 5.58%정도 증가한다. 그리고 도의 세입은 1.79% 정도 증가한다.

<표 14> 자치단체별 지방세입 확충효과 : 소매업 과표

(단위: 백만원, 원, %)

구분	지방세입(단위: 백만원)				1인당 지방세입(단위: 원)		
	세입총액(A)	세입증가분(B)	증가후 세입	증가율(A/B)	세입총액	세입증가분	증가후 세입
서울	14,209,141	879,808	15,088,949	6.19	1,396,728	86,483	1,483,211
부산	4,403,736	186,158	4,589,894	4.23	1,201,124	50,775	1,251,899
대구	2,788,136	134,143	2,922,279	4.81	1,104,338	53,132	1,157,470
인천	3,065,005	162,964	3,227,970	5.32	1,188,532	63,193	1,251,725
광주	1,715,631	115,513	1,831,143	6.73	1,224,425	82,440	1,306,865
대전	1,735,750	96,677	1,832,427	5.57	1,202,484	66,975	1,269,459
울산	1,559,493	69,372	1,628,865	4.45	1,442,035	64,147	1,506,182
경기	17,539,064	612,489	18,151,553	3.49	1,676,307	58,539	1,734,846
강원	7,796,279	75,548	7,871,828	0.97	5,124,495	49,658	5,174,153
충북	3,932,301	58,948	3,991,249	1.50	2,640,998	39,590	2,680,589
충남	5,144,717	71,918	5,216,635	1.40	2,633,716	36,817	2,670,533
전북	4,960,387	70,673	5,031,061	1.42	2,601,499	37,065	2,638,564
전남	7,465,114	76,372	7,541,486	1.02	3,758,506	38,451	3,796,957
경북	8,332,423	102,262	8,434,685	1.23	3,090,756	37,932	3,128,689
경남	10,270,871	108,158	10,379,029	1.05	3,267,010	34,403	3,301,413
제주	1,656,877	21,995	1,678,872	1.33	2,983,418	39,605	3,023,022
시	29,476,892	1,644,635	31,121,527	5.58	8,759,666	467,146	9,226,812
도	67,098,034	1,198,363	68,296,397	1.79	27,776,705	372,061	28,148,766
합계	96,574,926	2,842,998	99,417,924	2.94	36,536,372	839,206	37,375,578

이와 같이 특별·광역시의 세입증가효과가 도에 비해 크게 나타나는 것은 지방세입구조가 특별·광역시의 경우 의존재원 비중이 낮고, 도의 경우 의존재원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소비세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수는 증대시키지만 지방소비세 규모의 15%해당액 만큼 지방교부세규모를 축소시키므로 의존재원비중이 높은 도(광역인 도와 기초인 시군포함)의 경

우는 지방교부세 감소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특별·광역시외의 경우는 지방교부세 감소효과가 작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세입확충효과까지 감안한다면 지방소비세 도입시에 지방교부세제도의 개편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소비세 도입의 지방세입 확충효과를 개별 광역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매업 과표를 사용한 경우, 가장 지방세입 확충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자치단체는 광주로 6.73%이다. 다음으로 서울(6.19%), 대전(5.57%), 인천(5.32%), 대구(4.81%), 울산(4.45%), 부산(4.23%), 경기(3.49%), 충북(1.50%), 충남 (1.40%), 제주(1.33%), 경북(1.23%), 경남(1.05%), 전남(1.02%), 강원(0.97%) 순이다.

<표 15> 자치단체별 지방세입 확충효과 : 최종소비지출

(단위: 백만원, 원, %)

구분	지방세입(단위: 백만원)				1인당 지방세입(단위: 원)		
	세입총액(A)	세입증가분(B)	증가후 세입	증가율(A/B)	세입총액	세입증가분	증가후 세입
서울	14,209,141	841,668	15,050,809	5.92	1,396,728	82,734	1,479,462
부산	4,403,736	207,378	4,611,114	4.71	1,201,124	56,563	1,257,687
대구	2,788,136	119,561	2,907,697	4.29	1,104,338	47,356	1,151,694
인천	3,065,005	171,918	3,236,923	5.61	1,188,532	66,665	1,255,197
광주	1,715,631	84,317	1,799,948	4.91	1,224,425	60,176	1,284,601
대전	1,735,750	90,258	1,826,008	5.20	1,202,484	62,528	1,265,012
울산	1,559,493	59,950	1,619,443	3.84	1,442,035	55,435	1,497,470
경기	17,539,064	660,777	18,199,841	3.77	1,676,307	63,154	1,739,461
강원	7,796,279	74,365	7,870,644	0.95	5,124,495	48,880	5,173,376
충북	3,932,301	58,725	3,991,026	1.49	2,640,998	39,441	2,680,439
충남	5,144,717	73,615	5,218,332	1.43	2,633,716	37,685	2,671,402
전북	4,960,387	74,385	5,034,772	1.50	2,601,499	39,012	2,640,510
전남	7,465,114	84,549	7,549,663	1.13	3,758,506	42,568	3,801,074
경북	8,332,423	108,679	8,441,102	1.30	3,090,756	40,312	3,131,069
경남	10,270,871	111,118	10,381,989	1.08	3,267,010	35,345	3,302,355
제주	1,656,877	21,735	1,678,612	1.31	2,983,418	39,137	3,022,554
시	29,476,892	1,575,050	31,051,942	5.34	8,759,666	431,458	9,191,124
도	67,098,034	1,267,948	68,365,982	1.89	27,776,705	385,534	28,162,240
합계	96,574,926	2,842,998	99,417,924	2.94	36,536,372	839,206	37,375,578

4. 지방세입 형평화효과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세입 형평화 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자치단체간 세입형평화 효과를 변이계수를 이용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지방세입을 대상으로 변이계수를 살펴보면, 변이계수값은 지방소비세 도입전에 0.754978이었다. 그런데 지방소비세를 도입한 후 변이계수값은 다소 높아졌다. 즉, 소매업 과표를 『소비지표』로 사용하여 지방소비세를 배분한후 이에 따라 지방세입이 변화한 후의 변이계수는 0.761035(최종소비지출의 경우 0.762027)로 다소 높아졌다. 그러나 1인당 지방세입의 경우 지방소비세 도입전에 변이계수는 0.497159이었는데, 지방소비세 도입후의 변이계수는 0.481691(최종소비지출의 경우 0.482917)로 낮아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분석대상을 시도세입, 1인당 시도세입으로 바뀌어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시도세입의 경우 지방소비세 도입전에 변이계수는 1.083870이었는데 지방소비세를 도입한 후 변이계수값은 1.091725(최종소비지출의 경우 1.091171)로 다소 높아졌다. 그러나 1인당 시도세입의 경우, 지방소비세 도입전에 변이계수는 0.198196에서 지방소비세를 도입한 후 변이계수값은 0.192357(최종소비지출의 경우 0.190688)로 다소 낮아졌다. 즉, 1인당 지방세입을 기준으로 지방소비세 도입의 형평화효과를 살펴보면 지방소비세 도입이 어느 『소비지표』를 사용하든 세입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지방세입 전체를 대상으로 형평화효과를 살펴보면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지방세입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방소비세 도입이 적어도 현재보다 지방세수불균형을 악화시키지는 않지만, 지방세입불균형은 다소나마 조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16> 형평화효과 : 변이계수

구 분	지방세입	1인당지방세입	시도세입	1인당시도세입	
도 입 전	0.754978	0.497159	1.083870	0.198196	
도입후	소매업과표	0.761035	0.481691	1.091725	0.192537
	최종소비지출	0.762027	0.482917	1.091171	0.190688

VI.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비세 도입과 관련하여 논의되어야 할 쟁점사항을 지방소비세 세원의 선택, 지방소비세수의 귀속, 과세권의 결정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그리고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지방소비세 도입의 지방재정과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지방소비세 세원의 선택과 관련하여 세수의 충분성이나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를 공동세원으로 분여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소득·소비세원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고, 더구나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가 대부분의 소비세원에 과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분리방식으로 지방소비세를 도입한다면 거의 세수확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방분권을 추진할 세원조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려면 부가가치세와 세원을 공유하는 세원분배방식을 채택하되, 징세비용 등을 고려할 때, 세수분여방식의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생산지 원칙으로 과세되는 현행 부가가치세의 징세지역과 소비세의 귀속지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소비지표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의 소비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소비지표』로서 소매업 과표(매출), 최종소비지출(민간) 등을 검토하였다. 이들 『소비지표』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정책당국이 결정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모든 지표가 서로 장단점이 있다. 이들 지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들 지표를 조합한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 『소비지표』로 사용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과세권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시도세로 할 것이냐 시군구세를 할 것이냐는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양될 기능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기능이양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든 광역·기초관 재정조정은 필요하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에는 재정보전금제도, 조정교부금제도 등의 재정조정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지방소비세를 시도세로 도입하고 이들 재정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지방재정수요의 증가에 상응하는 광역·기초간 자원배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넷째,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세수확충효과는 소비지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소매업과표를 사용하였었을 경우에 특별시·광역시의 지방소비세수 확충효과가 도의 경우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세수 확충효과는 전반적으로 도가 시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지방세수나 시도세수의 불균형은 심화되지 않으며 오히려 적게나마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 지방소비세 도입이 지방세입부

문에 미치는 효과 중 세입확충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가장 세입증가효과가 큰 자치계층은 자치구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음으로 도본청, 특별시·광역시 본청, 시, 군, 광역시 군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직접 지방세수가 증대하는 계층은 시도본청이지만,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하여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도 세입확충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지방소비세 도입의 자치단체별 세입형평화효과를 분석한 결과, 1인당 지방세입을 대상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지방소비세 도입이 세입불균형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방세입을 대상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세입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합리적 지방소비세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소비지표』의 선정 등 지방소비세제의 설계 뿐만아니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등 관련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도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1999-2004.
- 권강웅. 『지방세강론』, 서울: 조세통람사, 2003.
- 김동기. 재정분권의 과제와 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발표회, 2003.
- 김대영. 『지방세체계의 합리적 조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95-12, 1996.
- _____. 지방소비세 도입의 실천방안, 『지방세』 통권 6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0.
- _____. 『지방소비세 도입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03-08(제359권), 2003.
- 김정훈. 『지방소비과세의 확충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 _____.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2.
- 이영희·이상용.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원조정방안』, 연구보고서 93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4.
- 박정수.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방안』, 지방행정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 _____. 『공동세제도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993.
-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예산개요』, 2002, 2003.
- _____. 『지방세정 연감』, 각년도
- _____. 『지방재정 연감』, 각년도
- _____. 『지방교부세 산정내역』, 2001, 2002
- 府税のしおり. 大阪府, 2000.
- 地方財務協會. 『地方財政概要』, 2000.

<부록 1> 일본의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는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일본의 지방소비세의 과세단체는 도도부현이며, 납세의무자는 국세인 소비세와 동일하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비세액의 25% 세율로 과세된다.

지방소비세의 신고·납부절차를 살펴보면, 양도할(국내거래)은 세무서에 소비세에 병행하여 신고·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화물할(수입거래)은 세관에 소비세에 병행하여 신고·납부토록 하고 있다.

일본의 국세인 소비세는 부가가치가 생산된 지역에서 과세가 이루어 지는 생산지원칙으로 징수되고 있고, 국세인 소비세가 징수될 때 지방소비세도 동시에 징수된다. 따라서 지방소비세가 징수된 세무관서가 위치한 지역에 세수를 귀속시키면, 세부담자인 최종소비자가 위치하는 지역과 세수 귀속지역이 다르게 된다. 따라서 세부담지와 세수의 귀속지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각 도부현에 납부된 지방소비세를 각 도도부현 등의 소비에 상당하는 액에 따라서 청산하도록 하고 있다. 각 도도부현의 소비에 상당하는 액에 대해서는 상업통계에 기초해서 연간 소매판매액외에 일정의 서비스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또한 도도부현간 청산후의 금액의 2분의 1상당액을 “인구·종업원수”로 안분하여 시정촌에 교부한다. 지방소비세의 창설에 따라 소비양여세는 폐지되었다.

지방소비세의 도도부현별 배분은 「소비에 상당하는 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는데, 이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2조의 144 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35조의 20, 지방세법시행규칙제7조의 2의 8부터 제7조의 2의 12 및 성령부칙 제3조의 2의 4 제1호에 규정되어 있다. 「소비에 상당하는 액」의 산정방법을 갑 현의 입장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면 이하의 4개의 액을 합계한 금액이 된다.

- ① 갑 현의 소매년간 판매액(상업통계표 제4권 품목편 제2표의 표첫부분 “소매계” 중 “년간판매액의 란”의 갑현의 액
- ② 갑 현의 서비스업 개인사업분 수입액(서비스업 기본조사보고 제2권 지역편 제10표 첫부분 “사업수입액” 중 “대개인”의 난)중 갑현의 액
- ③ 도부현의 소매년간판매액의 총액 및 도부현의 서비스업 대 개인사업 수입액의 총액의 합산액의 1/6에 상당하는 액을 인구(관보에 공시된 國勢調査수에 의해서 조사한 현재의 인구)로 안분하여 구한 갑 현의 액
- ④ 도부현의 소매년간 판매액의 총액 및 도부현의 서비스업 대개인사업 수입액의 총액의 합산액의 1/6에 상당하는 액을 종업원수(사업소, 기업통계조사규칙에 의해서 조사한 현재의 종업원수)로 안분하여 구한 갑 현의 액

<표 1> 도부현간의 청산의 기준

기 준	비 중
『소매연간판매액(상업통계)』과 『서비스업 대개인사업 수입액(서비스업 기본통계)』의 합산액	6/8
『인구(국세조사)』	1/8
『종업원수(사업소·기업 통계)』	1/8

각 시정촌에의 교부해야 하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도부현간의 청산 후에 있는 도부현의 수입액의 1/2에 상당하는 액의 1/2액을 인구로 안분하고, 여타 1/2의 액을 종업원수로 안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갑 현을 예로 들어 각 시정촌에의 교부해야하는 금액의 산정방법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 ① 갑현의 도부현간 청산후의 수입액의 1/2에 상당하는 액을 갑현내의 시정촌에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 ② 갑현의 도부현간 청산 후 수입액의 1/2에 상당하는 액의 1/2의 액을 인구에 의해 안분한다.
- ③ 갑현의 도부현간 청산 후 수입액의 1/2에 상당하는 액의 다른 1/2을 종업원수에 의해 안분한다.
- ④ 인구에 의해 안분한 액과 종업원에 의해 안분한 액의 합계액의 1,000엔미만의 단수를 공제한 액을 갑 현내의 각 시정촌에 교부한다.

<표 2> 시정촌에의 교부의 기준

기 준	비 중
『인구(국세조사)』	1/2
『종업원수(사업소·기업 통계)』	1/2

<부록 2> 지방소비세 도입의 지방세입과급효과

1. 자치단체별 지방세입확충효과 : 소매업 과세표준(매출)

<표 1-1> 특별시·광역시 본청

구분	순계(도입전)	지방세입확충효과						도입후 세입규모
		지방소비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총증가액	증가율	
서울	9,041,813	879,808	-485,208	-	-	394,601	4.36	9,436,413
부산	2,482,100	231,167	-122,912	-2,835	-43,908	61,513	2.48	2,543,614
대구	1,619,619	199,572	-72,750	-1,861	-65,054	59,906	3.70	1,679,525
인천	1,636,912	167,380	-77,540	-654	-5,985	83,201	5.08	1,720,113
광주	997,288	133,957	-79,787	-	-18,445	35,726	3.58	1,033,014
대전	970,489	106,913	-70,208	-	-10,236	26,468	2.73	996,957
울산	884,937	83,134	-46,280	-2,060	-13,162	21,631	2.44	906,568
합계	17,633,159	1,801,932	-954,685	-7,410	-156,791	683,046	3.87	18,316,205

<표 1-2> 특별시·광역시 자치구

구분	순계(도입전)	지방세입확충효과						도입후 세입규모
		지방소비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총증가액	증가율	
서울	5,167,329	-	485,208	-	-	485,208	9.39	5,652,536
부산	1,745,710	-	122,912	-	-	122,912	7.04	1,868,622
대구	913,978	-	72,750	-	-	72,750	7.96	986,729
인천	1,081,758	-	77,540	-	-	77,540	7.17	1,159,298
광주	718,343	-	79,787	-	-	79,787	11.11	798,129
대전	765,261	-	70,208	-	-	70,208	9.17	835,470
울산	406,152	-	46,280	-	-	46,280	11.39	452,432
합계	10,798,531	-	954,685	-	-	954,685	63	11,753,216

<표 1-3> 광역시 군

구분	순계(도입전)	지방세입확충효과						도입후 세입규모
		지방소비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총증가액	증가율	
부산	175,926	-	-	2,835	-1,101	1,733	0.99	177,659
대구	254,538	-	-	1,861	-374	1,487	0.58	256,025
인천	346,335	-	-	654	1,569	2,223	0.64	348,558
울산	268,404	-	-	2,060	-600	1,460	0.54	269,864
합계	1,045,203	-	-	7,410	-507	6,903	0.66	1,052,106

<표 1-4> 도 본청

구분	순계이전후	지방세입확충효과						세입규모
		지방소비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총증가액	증가율	
경기	4,735,196	640,565	-	-172,952	-	467,612	9.88	5,202,808
강원	1,008,654	111,615	-	-30,136	-42,108	39,371	3.90	1,048,025
충북	963,582	98,241	-	-26,525	-36,753	34,962	3.63	998,545
충남	1,127,838	114,476	-	-30,909	-44,098	39,470	3.50	1,167,307
전북	853,170	106,931	-	-28,871	-39,687	38,372	4.50	891,542
전남	1,054,118	85,259	-	-23,020	-28,641	33,598	3.19	1,087,716
경북	1,215,610	153,811	-	-41,529	-58,692	53,590	4.41	1,269,200
경남	1,654,333	193,939	-	-52,363	-77,882	63,693	3.85	1,718,026
제주	418,319	37,935	-	-10,243	-14,104	13,588	3.25	431,908
합계	13,030,820	1,542,772	-	-416,548	-341,966	784,257	6.02	13,815,077

<표 1-5> 시

구분	순계이전후	지방세입확충효과						도입후 세입규모
		지방소비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총증가액	증가율	
경기	11,774,317	-	-	167,265	-30,783	136,483	1.16	11,910,800
강원	3,692,558	-	-	20,794	-2,189	18,605	0.50	3,711,163
충북	1,196,812	-	-	15,607	-5,755	9,851	0.82	1,206,664
충남	2,164,163	-	-	18,129	-1,823	16,306	0.75	2,180,470
전북	2,299,536	-	-	23,441	-4,412	19,029	0.83	2,318,565
전남	2,418,064	-	-	11,936	1,570	13,506	0.56	2,431,570
경북	4,110,273	-	-	32,321	-3,081	29,240	0.71	4,139,513
경남	4,929,662	-	-	43,313	-15,848	27,465	0.56	4,957,127
제주	615,773	-	-	6,119	-1,917	4,202	0.68	619,975
합계	33,201,159	-	-	338,926	-64,239	274,687	0.83	33,475,846

<표 1-6> 군

구분	순계이전후	지방세입확충효과						도입후 세입규모
		지방소비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총증가액	증가율	
경기	1,029,551	-	-	5,687	2,707	8,394	0.82	1,037,945
강원	3,095,067	-	-	9,342	8,231	17,573	0.57	3,112,640
충북	1,771,906	-	-	10,918	3,216	14,134	0.80	1,786,041
충남	1,852,717	-	-	12,779	3,363	16,142	0.87	1,868,858
전북	1,807,681	-	-	5,430	7,842	13,272	0.73	1,820,953
전남	3,992,932	-	-	11,084	18,184	29,268	0.73	4,022,200
경북	3,006,539	-	-	9,208	10,224	19,432	0.65	3,025,972
경남	3,686,877	-	-	9,050	7,949	16,999	0.46	3,703,876
제주	622,785	-	-	4,123	81	4,204	0.68	626,989
군	20,866,055	-	-	77,622	61,796	139,418	0.66	21,005,473

<부표 2> 자치단체별 지방세입확충효과: 최종소비지출(민간)

<표 2-1> 특별시·광역시 본청

구분	순계(도입전)	지방세입확충효과						도입후 세입규모
		지방소비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총증가액	증가율	
서울	9,041,813	841,668	-464,174	-	-	377,494	4.17	9,419,307
부산	2,482,100	257,840	-137,094	-2,712	-49,502	68,533	2.76	2,550,634
대구	1,619,619	177,346	-64,649	-2,076	-57,319	53,303	3.29	1,672,922
인천	1,636,912	176,152	-81,604	-581	-5,985	87,982	5.37	1,724,895
광주	997,288	96,628	-57,552	-	-12,310	26,765	2.68	1,024,053
대전	970,489	99,576	-65,390	-	-9,318	24,868	2.56	995,357
울산	884,937	71,359	-39,726	-1,919	-10,962	18,753	2.12	903,690
합계	17,633,159	1,720,571	-910,188	-7,288	-145,396	657,699	3.73	18,290,857

<표 2 - 2> 특별시, 광역시 자치구

구분	순계이전후	지방세입확충효과						도입후 세입규모
		지방소비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총증가액	증가율	
서울	5,167,329	-	464,174	-	-	464,174	8.98	5,631,502
부산	1,745,710	-	137,094	-	-	137,094	7.85	1,882,804
대구	913,978	-	64,649	-	-	64,649	7.07	978,627
인천	1,081,758	-	81,604	-	-	81,604	7.54	1,163,362
광주	718,343	-	57,552	-	-	57,552	8.01	775,895
대전	765,261	-	65,390	-	-	65,390	8.54	830,652
울산	406,152	-	39,726	-	-	39,726	9.78	445,877
합계	10,798,531	-	910,188	-	-	910,188	8.43	11,708,720

<표 2-3> 광역시 군

구분	순계(도입전)	지방세입확충효과						도입후 세입규모
		지방소비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총증가액	증가율	
부산	175,926	-	-	2,712	-960	1,751	1.00	177,677
대구	254,538	-	-	2,076	-467	1,609	0.63	256,147
인천	346,335	-	-	581	1,751	2,332	0.67	348,667
울산	268,404	-	-	1,919	-448	1,471	0.55	269,875
합계	1,045,203	-	-	7,288	-125	7,163	0.69	1,052,366

<표 2-4> 도 본청

구분	순계(도입전)	지방세입확충효과						도입후
		지방소비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총증가액	증가율	세입규모
경기	4,735,196	688,250	-	-185,828	-	502,423	10.61	5,237,618
강원	1,008,654	93,853	-	-25,340	-30,632	37,880	3.76	1,046,535
충북	963,582	89,730	-	-24,227	-31,096	34,407	3.57	997,989
충남	1,127,838	114,111	-	-30,810	-43,572	39,729	3.52	1,167,566
전북	853,170	116,975	-	-31,583	-45,607	39,785	4.66	892,955
전남	1,054,118	114,736	-	-30,979	-46,619	37,138	3.52	1,091,256
경북	1,215,610	173,927	-	-46,960	-70,862	56,105	4.62	1,271,715
경남	1,654,333	198,590	-	-53,619	-80,498	64,473	3.90	1,718,805
제주	418,319	33,962	-	-9,170	-11,483	13,309	3.18	431,628
합계	13,030,820	1,624,133	-	-438,516	-360,369	825,248	6.33	13,856,068

<표 2-5> 시

구분	순계이전후	지방세입확충효과					도입후	
		지방소비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총증가액	증가율	세입규모
경기	11,774,317	-	-	179,717	-33,263	146,454	1.24	11,920,771
강원	3,692,558	-	-	17,485	923	18,408	0.50	3,710,966
충북	1,196,812	-	-	14,255	-4,482	9,772	0.82	1,206,585
충남	2,164,163	-	-	18,071	-1,097	16,974	0.78	2,181,138
전북	2,299,536	-	-	25,643	-5,211	20,432	0.89	2,319,968
전남	2,418,064	-	-	16,062	-710	15,353	0.63	2,433,417
경북	4,110,273	-	-	36,548	-4,829	31,720	0.77	4,141,993
경남	4,929,662	-	-	44,352	-15,683	28,669	0.58	4,958,331
제주	615,773	-	-	5,478	-1,317	4,161	0.68	619,933
합계	33,201,159	-	-	357,612	-65,669	291,943	0.88	33,493,102

<표 2- 6>

구분	순계(도입전)	지방세입확충효과						도입후
		지방소비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총증가액	증가율	세입규모
경기	1,029,551	-	-	6,110	5,789	11,900	1.16	1,041,451
강원	3,095,067	-	-	7,855	10,222	18,077	0.58	3,113,144
충북	1,771,906	-	-	9,972	4,573	14,546	0.82	1,786,452
충남	1,852,717	-	-	12,738	4,173	16,912	0.91	1,869,628
전북	1,807,681	-	-	5,940	8,228	14,168	0.78	1,821,849
전남	3,992,932	-	-	14,917	17,144	32,061	0.80	4,024,993
경북	3,006,539	-	-	10,412	10,442	20,854	0.69	3,027,393
경남	3,686,877	-	-	9,267	8,708	17,976	0.49	3,704,852
제주	622,785	-	-	3,691	573	4,265	0.68	627,049
합계	20,866,055	-	-	80,904	69,853	150,757	0.72	21,016,812